

樹立을 해서 地方議會의 議決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特別市長으로부터 同意要請된 市有財産管理計劃 等の 그 案件에 있어서는 取得이 7件 4萬 2,042坪, 處分이 9件 2,926坪으로 94年度 豫算編成審議時 承認事項으로 既 되어 있던 事項입니다.

買入할 財産에 있어서는 油印物에 3페이지, 4페이지, 5페이지에 자세히 記錄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6페이지를 보시면 94市有財産管理計劃의 要約을 報告했습니다.

그리고 10페이지에 賣却할 資産의 檢討意見事項도 10페이지, 11페이지 油印物을 參考해 주시고요. 그 다음에 세세한 事項에 대한 地籍의 圖面과 工事概要와 時價와 公示地價와 그 重要事項은 13페이지에서 맨 끝까지 전부 檢討報告를 올렸습니다.

이상 油印物을 參考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

(參 照)

검토의견

-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장은 그 소관의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매년 시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
- 이번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동의 요청된 시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
 - 취득 7건 67필지 138,984.37m²(약 42,042평)
 - 처분 9건 9필지 9,675.6m²(약 2,926평)로서 그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.

가. 매입자산

- (1) 강북정수장이 '96년부터 일 50만톤씩 동수하게 됨에 따라 관압상승으로 인한 급수관 파열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압조절에 필요한 조압수조를 중랑구 망우동 산28-1 외 5필지 19,465m²에 건설하려는 것으로서 매입 추정액은 35억 2,000만원으로(m²당 181,000원)이

나 공시지가는 m²당 60,000원~105,000원임.

따라서 강북정수장 조압수조·건설위치 및 규모와 함께 매입가격의 적정성여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.

- (2) 북악터널배수지 건설부지인 서대문구 홍제동 산1-100 외 1필지 10,200.37m²에 대한 추정가액은 1,884백만원으로 m²당 184,000원이고, 인근지 공시지가는 m²당 246,000원으로 매입가격의 적정성과 위치 등이 심사되어야 할 것임.
- (3) 연희배수지 건설부지로 서대문구 홍은동 산26-157 외 1필지 10,909m²에 대한 추정가액은 1,326백만원으로 m²당 122,000원이나 공시지가는 m²당 121,000원으로 '93년도 관리계획 동의된 사항임.
- (4) 공릉배수지 부지로 매입하려는 노원구 공릉동 산2 외 7필지 57,112m²는 매입추정액이 2,600백만원으로 m²당 46,000원이나 공시지가는 m²당 20,000~41,000원으로 매입가격의 적정성과 함께 위치, 규모 등이 심도있게 심사되어야 할 사항임.
- (5) 수도자재사업은 이전부지인 성동구 성수1가동 685 외 35필지 31,016m²는 뚝도정수장 인접 부지로 도시계획상 수도시설 용지로 결정되었고 추정가액은 17,927,255천원으로 m²당 578천원이나 공시지가는 m²당 27만원~63만원임
- (6) 구의정수장내 수도기술연구소 신축부지 성동구 구의동 130번지 3,960m² 중 2,200m²는 예산부족으로 인한 '93년도 보상잔여토지로 추정가액은 450,000천원이고 m²당 204천원으로 감정가격은 205천원임.
- (7) 국민단지배수지 확장부지로 서초구 방배동 산84-11 외 4필지 1,500m²에 대한 추정가액은 450,000천원으로 m²당 가격은 300천원이고 공시지가는 120천원~130천원임.

| | |
|---|--|
| <p>(8) 성북가압장 확장부지 성북구 성북동 산24-10 660㎡에 대한 추정가액은 330,000백만원으로 m²당 500천원이며, 공시지가는 17,700원임.</p> <p>(9) 삼우배수지 확장부지로 은평구 갈현동 산12-5 의 2필지 4,000㎡에 대한 추정가액은 480,000천원으로 m²당 120천원이며, 공시지가는 m²당 11,200원임.</p> <p>(10) 영등포정수장내 보상대상토지 영등포구 양화동 산2-4 의 1필지 162㎡에 대한 추정가액은 30,000천원으로 m²당 185천원임. 위와 같은 검토 보고한 결과는 취득 토지 m²당 추정가격이 공시지가와 다소 차이가 있음.</p> <p>○ 국민단지배수지 확장부지 서초구 서초동 산84-11 의 3필지는 공시지가가 m²당 120,000원 서초구 서초동 산44 임야는 공시지가가 m²당 130,000원이나 취득가액은 공시지가의 230%임.</p> <p>○ 성북가압장 확장부지는 공시지가가 m²당 17,700원이나 취득가액은 공시지가의 2,824%인 3억 3,000만원임.</p> <p>○ 삼우배수지 확장부지는 공시지가가 m²당 11,200원이나 취득가액은 공시지가의 4,285%인 4억 8,000만원으로 산출되어 있어 공시지가와 취득예정가액의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지적함.</p> <p>(檢討報告書 一部內容 收錄省略)</p> | <p>탁드리면서 本 同意案을 可決하여 주실 것을 動議합니다.</p> <p>○委員長 崔鍾根 動議에 再請 있습니까? 다른 異議 없으십니까?</p> <p>(「없습니다」하는 委員 있음)</p> <p>그러면 이상으로 質疑答辯을 마치겠습니다.</p> <p>그러면 서울特別市長이 提出한 '94市有財産管理計劃同意案을 다른 特別한 意見이 없으시면 原案대로 議決코자 하는데 異議 없으십니까?</p> <p>(「없습니다」하는 委員 있음)</p> <p>그러면 '94市有財産管理計劃同意案을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.</p> <p>(議事棒 3打)</p> <p>.....</p> <p>(參 照)</p> <p>'94시유재산관리계획획동의안 (수도사업 특별회계)</p> <p>시민생활의 질적 수준향상에 따라 새로이 증대되고 있는 행정수요인 깨끗한 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강북정수장 건설부지 매입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'94수도사업특별회계 시유재산 관리계획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의한다.</p> <p>○ '94시유재산 관리계획 계상재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┌취득 7건 67필지 138,984.37m² └처분 9건 9필지 9,675.6m² <p>*관리계획 계상 재산목록 별첨</p> |
| <p>○委員長 崔鍾根 수고하셨습니다. 張汝龜委員님.</p> <p>○張汝龜委員 張汝龜委員입니다.</p> <p>議案番號 941號 '94市有財産管理計劃同意案, 本委員이 이 件은 충분히 檢討를 해 본 바에 의하면 우리 市有財産을 팔고 私有財産을 사들여서 處理하겠다는 內容인데, 執行部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市有財産은 競爭入札에 부쳐서 비싸게 팔고, 또 우리 上水道事業本部에서 必要한 땅은 所有者하고 協議해서 사들이는 것이니까 이것은 싸게 사들여서 市民에게 조금이라도 有益하도록 해 주시기를 부</p> | <p>(다음 페이지에 계속)</p> |